

한글학교 등록 안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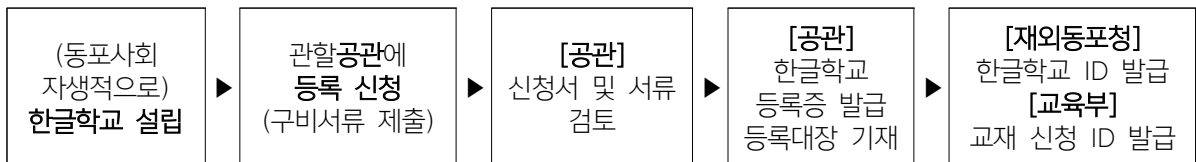
1 한글학교 정의

- 재외국민*에게 한국어·한국역사 및 한국문화 등을 교육하기 위하여 재외국민단체 등이 자체적으로 설립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등록한 비정규학교(「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)

* 동 법은 '재외국민'을 상정하고 있으나, 재외동포청은 '재외동포'(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,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)를 포함하여 한글학교 지원

2 한글학교 등록·폐교 절차 등

- 한글학교 등록 절차 (『법률』 제30조①, 『시행규칙』 제35조)



- [한글학교⇒관할공관] 구비서류(재외교육기관 등록신청서) 제출
- [관할공관] 검토
- [관할공관] 한글학교 등록증 발급 및 등록대장 기재
- [관할공관⇒재외동포청,교육부] 등록 사실 공문 통보
 - [재외동포청,교육부⇒관할공관] 한글학교ID·교재신청ID 발급, 안내

※ 붙임 『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』 서식(등록신청서/등록증/등록대장) 참고

- 한글학교 폐교 절차 (『법률』 제30조②)

- [관할공관⇒재외동포청,교육부] 폐교(휴교 포함) 사실 공문 통보
 - 사유 명시(국정감사 시 국회 제출) / 등록대장 기재(관할공관)

- 한글학교 지도·감독 (『법률』 제39조)

- 재외교육기관인 한글학교는 공관장의 지도·감독을 받는다고 명시

3 한글학교 등록시 공관 점검사항

① 한글학교 정의 및 설립목적에 적합 여부 확인

- 영리학원 형태 운영 여부(TOPIK 학원, 한국어 학원 등, 한국어 외 영어·수학·과학 등의 과목을 가르치는 학원 형태 등)
- 개인과외·공부방 형태 운영 여부(1대1 수업 등 소수 인원 대상 운영, 특정 장소 없이 가정집 등에서 운영하는 경우 등)
- 한국어 및 정체성(한국 역사·문화) 수업 위주 운영 여부(학습 목적이 아닌 단순 친목 모임, 종교단체 모임·성경공부 형태 등)

② 한글학교 정관(or 운영규정, 교칙 등) 확인

- 한글학교 정관(운영규정 등) 상 목적과 내용에 비민주적 운영, 사회 미풍양속 저해, 반국가적 성격 등 사항의 포함 여부

③ 재외동포 대상 운영 여부 확인

- 동포청의 지원심의 대상은 “재외동포(다문화 가정 포함) 10명 이상 재학”하는 한글학교

④ 교육과정, 수업시수·주수 확인

- 동포청의 지원심의 대상은 “주당 3시수 이상의 한글 및 정체성(한국 역사·문화) 수업”을 시행하는 한글학교
- 신규학교의 경우, 연간 최소 20주 이상 운영하는 경우에 등록 검토
- 학년별, 수준별 수업 운영 계획 확인

⑤ 교사 확보 여부 확인

- 한국어교원자격증(문화체육관광부), 한국(교육부) 또는 거주국 교사자격증 보유 여부 등 교사 역량을 가점 요소로 반영하여 등록 검토

⑥ 장소의 안전성(보험 등)과 학습환경(교실, 주변환경 등) 사항 확인

⑦ 한글학교의 난립·내부분란 등 방지를 위해 기존의 한글학교에서 분리·설립한 한글학교의 경우, 분립 후 학교 운영을 시작한 다음 해에 공관 등록

- 분립 한글학교의 경우, 재외동포 학생 수 10명 이상인 경우 등록 검토

※ 단, 공관 및 동포사회의 특별한 의견이나 사유가 있는 경우, 동 기준과 관계없이 학교 운영 시작 당해 연도 등록 가능

⑧ 필요 시 현지 실사 후 등록 검토

⑨ 공관 등록 후, 신규학교에는 관할지역 한글학교협의회 안내, 협의회에는 신규 한글학교 정보 전달

『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』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재외국민”이라 함은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한다.
2. “재외교육기관”이라 함은 재외국민에게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된 한국학교·**한글학교**·한국교육원 등의 교육기관을 말한다.
4. “**한글학교**”라 함은 재외국민에게 한국어·한국역사 및 한국문화 등을 교육하기 위하여 재외국민단체 등이 자체적으로 설립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등록한 비정규학교를 말한다.

제30조(재외교육기관 등의 등록) ①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재외교육기관(한국학교 및 교육원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및 재외교육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**공관장에게 등록**하여야 한다.

1. 설치목적
2. 설치장소
3. 대표자
4.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
5.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정관

②공관장은 **재외교육기관** 및 재외교육단체의 **등록 및 폐지 사실**을 외교부장관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**보고**하여야 한다.

제38조(재외국민의 교육지원에 관한 특례)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대상 범위에 **한민족(韓民族)으로서**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. 다만, 그 외국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39조(지도·감독) 한국학교와 학교법인 및 교육원은 교육부장관과 공관장의 지도·감독을 받고, 그 밖의 **재외교육기관**과 재외교육단체는 **공관장의 지도·감독**을 받는다.

『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』

제35조(재외교육기관 등의 등록) ①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가 공관장에게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**등록신청서**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②공관장이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**등록증**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③공관장이 제2항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재외교육기관(재외교육단체) **등록대장**에 그 등록 사항을 적어야 한다.

재외교육기관(재외교육단체) 등록신청서

[별지 제2호서식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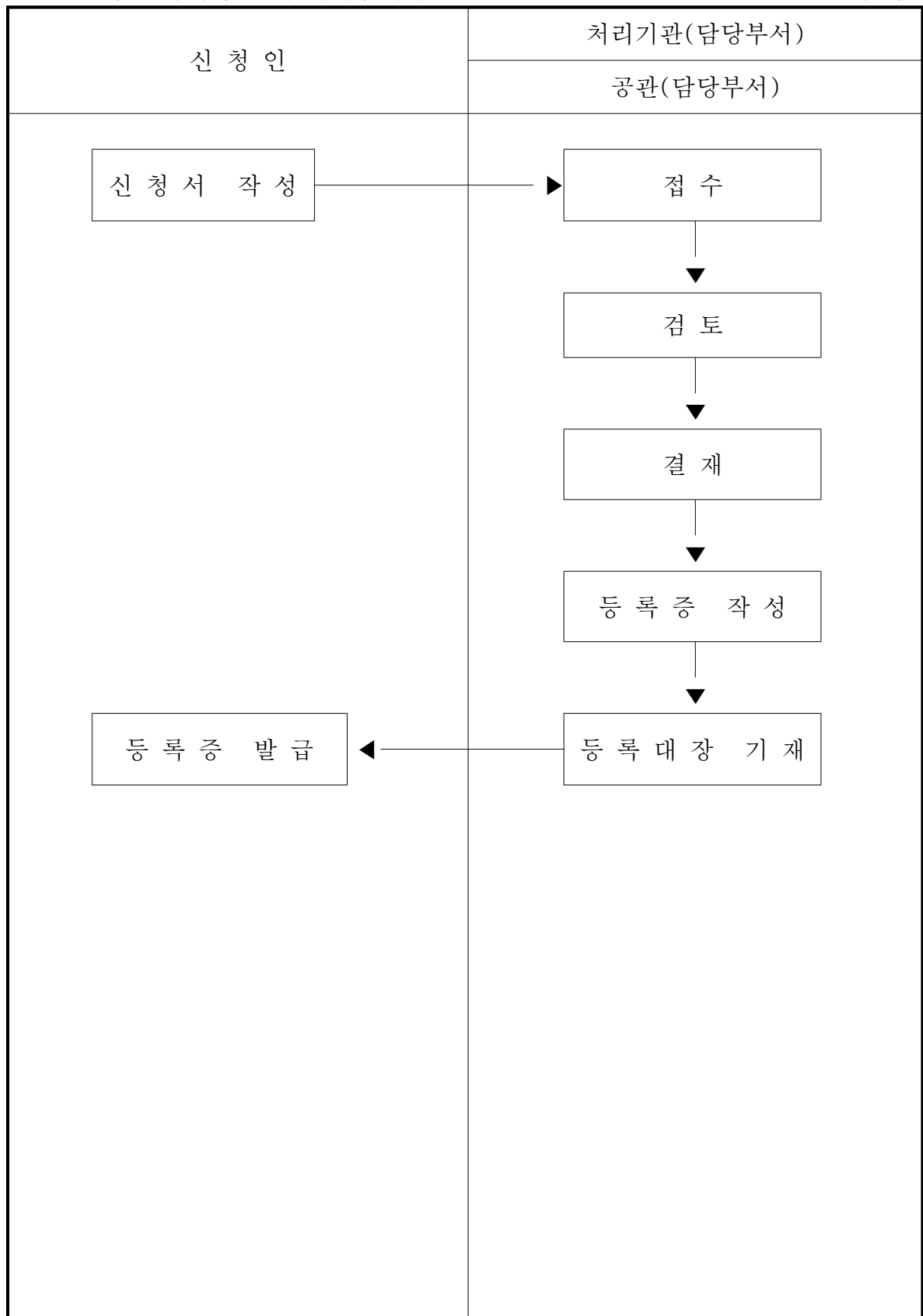
(앞쪽)

재외교육기관(재외교육단체) 등록신청서				처리기간 7일
설치자 (대표자)	①성명 (기관명)		②생년월일	
	③주소	(전화번호:)		
④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				
⑤설치 목적				
⑥설치 장소				
⑦사업 내용				
⑧경비 및 시설의 유지 방법				
⑨시설·설비 명세				
⑩설치일				
「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 ()대사(총영사) 귀하				
구비서류 (각 1부)	1. 사업 실적 및 사업계획서 2. 시설·설비 현황 3.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4. 재산 목록 및 그 입증 서류 5. 시설의 소유자 증명 서류 6. 시설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시설의 사용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7. 법인 또는 단체는 정관이나 규약 8. 설치자(대표자)의 이력서			

210mm×297mm (70g/m²)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(뒤 쪽)



참고 3

한글학교 현황조사서 등(신규학교 등록시 활용)

20 년 한글학교 현황조사서

■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
국가		관할공관	
한글학교명		학교ID	
교장 성명		작성자명(직책)	* 작성 담당자명
작성자 이메일		작성자 연락처	* 국가번호 포함 휴대번호

1.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

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) 재외동포청(이하 “동포청”)은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사업(이하 “지원사업”) 심의, 지원 및 현황자료 발간 등 관련 업무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합니다.

(개인정보 수집대상 및 항목)

- 대상 : 한글학교 대표자, 학생 및 교원
- 정보 : 성명, 소속, 직위, 성별, 학령대, 재외동포 여부, 체류자격, 전화번호, 이메일, 직업, 경력, 보수유무, 자격증 관련 사항 등

(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) 사업 종료 후 5년

(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 거부)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절차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사업 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2. 한글학교 대표자 확인

본인은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부합하게 제출하는 모든 서류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, 붙임과 같이 2026년 한글학교 현황조사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한글학교 대표자 성명 (서명)

개인정보 처리 동의 E-서명 ☐ ← 체크 필수

재외동포청장 귀하

20 년 한글학교 현황조사서

1. 학교일반	한글학교명	한글 작성		학교ID	
	국가, 도시	영문 작성		전화번호	국가번호 포함
	세부주소	반드시 영문 작성		학교이메일	
	공관 등록여부	☐ 등록 ☐ 미등록	공관 등록일자	YYYY-MM-DD	
2. 설립자	성명	한글 작성		설립일자	YYYY-MM-DD
3. 교장	성명	한글 작성		이메일	
4. 회계담당	성명	한글 작성		이메일	
5. 현지 비영리법인 등록여부		☐ 등록 ☐ 미등록	비영리법인 등록처		

[illegible]

7.교사현황	총 교사수	①교과담당	②보조 등	한국, 거주국 정교사 자격증	한국어교원 자격증 보유자	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자	재외동포청 (또는 재단) 인증과정 이수자
	①+②	0명	0명	0명	0명	0명	0명
	교사봉사료 지급현황	☐ 유급교사(0명) ☐ 무급교사(0명) / (미지급 사유 :)					

8.시설현황	시설유형	☐ 한인회관(한인회/민단/한인상공회의소 등 한인 커뮤니티 시설) ☐ 현지학교 ☐ 현지 공공시설(커뮤니티센터, 문화센터 등) ☐ 종교시설 ☐ 일반상업시설 ☐ 기타
	이용현황	☐ 유상임차(아래 2개 항목 기재) ☐ 무상임차 - 임차계약서 연간 임차료 (USD , <i>필수사항</i>) - 임차계약서 임차기간 (<i>YYYYMMDD-YYYYMMDD</i> , <i>필수사항</i>)

9.교육활동	교육과목	☐ 한국어 ☐ 역사 ☐ 문화 ☐ 기타	학급수	00 학급
	수업요일	☐ 주중(월~금) ☐ 토요일 ☐ 일요일	연간 수업일수	00 일
			1주당 수업시수	00 시수

10. 2025년 연간 수입현황 ★ 반드시 USD 환산 작성	재외동포청 운영비 지원금	USD	0
	수업료(연간 학비수입)	USD	
	기타수입(후원금 등)	USD	
	현지정부 지원금	USD	
	총 계	USD	

20 년 학생 목록 (신규학교인 경우 필수 작성을 요구함)

No	성명	성별(남/여)	①학령대	학급명	②재외동포 여부(Y/N)
			번호로 표기		

※ 26년 학생 목록은 최근 학기(ex. 25년 2학기)의 학생 정보를 개개인 중복이 없도록 작성

※ 작성방법(필요시 가로방향으로 전환하여 사용)

① 학령대 : 1.유아 / 2.초등 / 3.중등 / 4.고등 / 5.대학~성인

② 재외동포 여부

- Y : 국적에 관계 없이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자(국제결혼/다문화 가정 자녀, 입양인, 고려인, 조선족, 재외국민 등)

- N : 한민족의 혈통을 지니지 않은 자(국제결혼 배우자 등)

/끝/

20 년 교사 목록 (신규학교인 경우 필수 작성을 요구함)

[illegible]

※ 26년 교사 목록은 최근 학기(ex. 25년 2학기)의 교사 정보를 개개인 중복이 없도록 작성

※ 작성방법(필요시 가로방향으로 전환하여 사용)

① 자격증코드 : 아래의 번호를 기입

1.한국어교원 자격증 보유자 / 2.재외동포청(또는 재외동포재단) 교사인증제 이수자 /
3.한국어교원양성과정 수료자 / 4.한국,거주국 교사자격증 / 5.교육학위 소지자(한국 또는 거주국)
/ 6.없음

* 여러 개의 자격을 갖고 있는 교사의 경우, “한국,거주국 교사자격증 > 한국어교원자격증 > 한국어교원
양성과정 수료 > 교사인증제 이수” 우선 순으로 1개만 선택

② 교사구분 : 아래의 번호를 기입

1.교과담당교사 / 2.기타(고등학생 등 수업 보조교사, 영양교사, 보건교사, 통학교사 등)

/끝/

1. ○○○한글학교 소개

1. 학교연혁(예시)

- 2018년~ 현재 : 000 한글학교로 명칭 변경 및 이전 후 현재까지 운영중
- 2017.8.1 : 캘리포니아주 비영리기관 등록[501(c)]
- 2017.3.1. : 주LA총영사관에 등록(등록번호: 00-000)
- 1970.5.3. : 000 한글학교 설립(설립단체: 한인상공회의소)

2. 학교현황(예시)

- 총학생수 50명, 과목담당 교사 12명, 안전요원2명, 보조3명
- 토요일수업 3교시 * 7학급, 연간 30주
- 이사회(연1회, 6월), 회계감사(연1회, 7월)

3. 교육 방향(예시)

- 교훈(비전) : 함께 배워서 큰 사람이 되자
- 교육목표 : 한국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, 한국어로 소통할 수 있다
- 특별활동 : 독도 수호 활동, 칠레한글학교와 교류 프로그램

4. 2026년 수업계획(다음의 3중 택 1)

- 대면 / □ 비대면 / □ 하이브리드(대면/비대면 혼합)

5. 특징(예시)

- 유아 및 10세 이하 학급 위주로 구성
- 이중언어 교육에 강점 (한국역사수업 전담교사 2명, 한국어/영어로 진행)

6. 교실활동 수업(※사진 2매로 제한)

학교 전경	교실활동

2. 20 년 연간 학사일정 운영 계획

□ 학교명 :

<상반기 수업: 회>

월 주차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
1	<방학>		삼일절 기념행사			현충일 기념식
2	<방학>	설날행사 (수업없음, 민속놀이)			<어버이날 행사>	
3						졸업식 및 발표회
4				<기말평가> 한국어 한국역사		<2학기 시작>
5						<방학>

<하반기 수업: 회>

월 주차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1	<방학>	<방학>	<2학기 시작>			<역사문화퀴즈대회>
2	<방학>	<광복절 행사>		한글날 행사 (백일장)		
3	<여름캠프>	<방학>				<중간평가> 한국어시험 TOPIK시험
4	<교사연수> 연합회 연수참가	<방학>	추석행사 (송편만들기)			<방학>
5	<방학>					<방학>

※ 각 학교에서 사용하던 학사일정표가 있을시에는 그대로 제출 가능

/끝/

3. 20 년 수업시간표 계획

□ 학교명 : OO 한글학교

구분		교과목 (수업명)	학급구분(예시)			(추가가능)	
			유아반	초급반 (1학년~3학년)	중급반 (4학년~6학년)		
1	한국어	한글 I	O		O		
		한글 II		O	O		
		TOPIK			O		
		SAT					
		(추가가능)					
2	한국역사/문화	민속놀이		O			
		한국예절수업	O				
		한국역사		O			
		(추가가능)					
3	기타	K-pop댄스			O		
		체육					
		미술		O			
		수학	O				
		(추가가능)					
비고		총 9과목	3교시	4교시	4교시		

※ 특이사항(있을시 작성)

-
-
-

※ 기존 사용하던 시간표가 있을 시 그대로 제출 가능

/끝/